

병원과실 불구된 교포 항소심 전한이사회 차원 관심집중

플러싱병원 상대 형남구氏 승소경우 획기적 전기될듯

지난 90년도 플러싱 YMCA 락커룸에서 미끄러져 플러싱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았다가 중신 허반신 불구가 된 교포사회 관심을 모았던 형남구씨(41)가 최근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결과를 놓고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형씨는 88년 11월 사고 직후 플러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측의 무관심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방관속에 전문의가 아닌 의과대학생을 보조원으로, 기동함으로써 허반신 기능이 평생 마비되는 상해를 입게 돼 병원과 관계 의사를 상대로 편지방법원(Supreme Court of Queens County)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형씨는 수술과정

에서 보조원이 의사가 수술시 들고있어야 하는 척추를 산소가 흡입되도록 가하는 힘을 시간에 맞추어 조절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영면이 부위와 오른쪽으로 잡고 있던 쪽의 다리 기능이 마비중세를 가져오면서 기능 일체를 정지당했다.

형씨의 사건담당 상해 전문 김동민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고와 관련, 형씨는 병원측과 수술 담당의인 버나드 퍼먼박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청구했었는데, 그간 생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1차로 퍼먼 박사측과 합의,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2백50만달러를 받기로 합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씨는 또한 병원측으로부터도 당시 3주간의 제

판 종료일인 3월 23일 이전 1백50만달러로 합의할 것을 제안 받았으나 이를 취소, 4백~6백만달러를 요구했다 패소당한 후 93년 9월 29일 주법원(Appellate Division 2nd Department)에 항소, 지난달 29일 구두심의(Oral Argument)를 끝내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형씨의 이 케이스는 의료사고와 관련, 대부분의 한인들이 병원이나 담당의의 과실로 피해를 입어도 소송에서 거의 포기하거나 패소하게 되는 '현상'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후 상소법원에 항소한 케이스는 이한락씨 케이스에 이어 뉴욕주에서는 두번째이다. 이번 그의 재판에 대한

결과에 한인들의 관심이 쏠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민 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 한인이 항소하는 케이스는 뉴욕주 내에서는 처음으로 있다"면서 "이번 재판에서 이길 경우 획기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후 한인사회 각계에서는 형씨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약 6만달러에 달하는 은정을 전한 바 있다. 【여주영 기자】

김호태
기영
의근
경림

TIMES
38031
except
days for
by The
22-27th
City,
Mailing

ress cha
wa, Inc.
ig Island

과
영수
지체수술
및 수술
St. 1873
942호

몬
사

1616
4998

시

전화번호: 212 505-2111

1-800-955-5888

▲ 두
이
어
라는

내렸다.
연방
법정
페데리
관은 이
원 이스
해방기
화합정
드 트레

The Korea Times

NEW YORK Issue No. 8131 1996년 1월 26일 (금요일) (일판) (718) 784-4500·426-5665 (편집) (718) 46

차사고 상해보상비 250% 인상

한인피해자도 충분한 보상 가능

현금 지급자에게는 불리할 수도

지난해 말까지 뉴욕주 내에서 적용돼 오던 자동차 상해보험에 보상비가 올해부터 최저가격이 중점보다 2배 50% 크게 인상, 한인들이 차 사고시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상해 자동차보험에 관한 뉴욕주 법규가 올해부터 대폭 개정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주법에 의하면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입었을 경우 중상 보험회사로부터의 1만달러, 사건당 2만달러로 받던 최저가의 보상료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1인당 2만5천달러, 사건당 5만달러로 액수가 늘어났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단, 이 법규에는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소송할 시 자격요건이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부차적인 요건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개정안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보상금을 이전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돼 피해가 많은 한인들의 입장에서 환영의 시선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따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보수적으로 따르는 조항에 의해 부상 정도

가 가벼운 경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부정적인 시각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보상액수가 적은 예전의 상황에서는 법원에 출제 접수되는 많은 타박상 케이스가 이번에는 부차적인 조항에 의해

심각한 정도의 차상인 경우 소송 자체가 지극히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버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동민 상해 전문 변호사는 "이번에 변경된 주 개정안은 '한인들이 사고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람들도 모두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원기어코 사고 정도를 가늠하는 보수적인 판례법을 각 보험회사가 적용할 것임을 보여 부상 정도가 심할수록 보상액이 적은 경우에도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인들에게 있어 부정적

인 연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판례법으로는 심각한 정도를 3개월 정도 입을 수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규정에 의해 부상 정도를 구체적으로 재평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장을 갖고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거의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신규법규가 불리한 수도 있는 것으로 보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여주영 기자]

플러싱 YMC

16명 부상자 발생... 모든 프

재가 발생, 인명피해는 없으나 모든 프로그램이 24일 무기한 중단되는 손실을 가져왔다.

경찰측에 의하면 이 화재는 이날 밤 10시30분경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1백50여명의 소방대원들이 메인스트리트와 바운스트리트, 노던대트 일부를 차단한 상태에서 40여분 동안 불길과 싸워 4명의 소방관을 포함한 총 16명의 부상자를 입혔다고 밝혔다.

화재는 3층 뒤쪽 체육관에서 불이 발생했는데 4층, 5층까지 불길로 인한 피해가 따랐으며 진화 과정에서 뿌려진 물로 깨진 유리, 건물의 안전성 여부

재판 아닌 「진술」 왜 필요한가

〈문〉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지급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중입니다.

얼마전 법원에서 법원으로 나오라 하여 가보니, 판사는 나오지 않고 상대방측의 변호사와 통역관이 나왔고 저의 사고에 대하여 진술을 들어보더니 그 내용을 속기사가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날 재판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재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왜 해야 하며, 잘못된 통역들은 어떻게 교정할 수 있습니까.

〈답〉 귀하께서 진술하신 자체는 뉴욕 민사 법정 절차에 있어서 재판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진술입니다. 이 과정은 재판을 하기 전 단계에서 주장하는 사고원인,

인과관계, 피해, 보상 액수, 목적 등을 미리 알고자 하여 만들어진 법정절차입니다.

즉, 미국에서는 형사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나 가해자가 반드시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가능한 합의절차를 위하여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판사나 배심원이 없는 가운데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대충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더 중요한 목적은 민사재판에서는 쌍방이 알고 있지 않은 예기치 않은 자료나 조사해보지 않은 피해 요구를 제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귀

상
해



▲ 김동민 변호사

하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소송을 한 다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과정중에 하나가 원고측이 주장하는 피해 보상의 구체적인 내막, 예를 들자면 모든 의사기록, 치료 기록, 병원기록, 정밀검사 기록 등을 직접 피고측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협조하며 그 과정중 하나인 진술에 임하여야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가장 중요

한 부분은 진술을 하기 전 변호사와 진술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또한 진술하시는 가운데 잘못 흔히 발생하는 통역문제를 제정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분들은 통증을 설명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무시고 아프다든지, 저리다든지 또는 마비가 오는 증세가 있다는 부분적인 통증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통역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원고측 자체에서 제대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상해소송중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한 절차가 바로 이 진술입니다. 확고한 진술을 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인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고 또한 가해자 측에서의 합의 요구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뉴욕 차에 치였는데...

〈문〉안녕하세요. 저의 12살 된 아들이 93년도에 아빠와 각각 자전거를 타고 가다 뉴저지에서 뉴욕 번호판 차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있던 차(운전자)와 또 다른 증인이 말하길 아이가 뛰어들어(줄 안쪽으로 갔다고 함) 거의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군요. 저의 아들은 병원을 다니다가 보험처리도 100% 되는 입장이 아니고 하다보니 중단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무릎 옆 13군데 바늘을 꿰맸고 흉터가 커서 여름에는 반바지를 입어도 크게 표시가 납니다. 또한 가끔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운동을 할 경우)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이가 잘못을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병원혜택)을 못 받는지요.

〈답〉첫째, 귀하께서는 보상이란 개념을 혼돈하고 계십니다. 질문에서 보상을 병원혜택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뉴저지에서 보행자가 뉴욕차에 치였을 경우, 먼저 어느 주의 법이 관리하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제 사법에 의하여 '컴만 어퍼레이티브 뉴클리어스 팩스(법의 원칙, 사실, 조건)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상해에서는 상해가 발생한 지역 즉, 이 경우에는 뉴저지 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과실법도 이 법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다를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이미 오래된 뉴욕

상 해

무과실법을 본따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귀하의 가족이 잘못을 보험회사는 무과실법에 의해 25만 달러까지 치료비를 주게 되어 있고, 그 회사는 다시 정부로부터 받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보험처리가 100%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뉴저지주 무과실법에 의해 귀하의 아들은 25만달러 의료혜택비 중 처음 디덕터블 250달러와 5천달러에 관한 20% 1천달러 즉, 1,250달러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만약 변호사가 있는 경우, 사건이 종결되어 가해자 측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후에 변호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 뉴저지주법이 보행자의 경우 1,250달러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을 고등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보험회사가 무과실법에 의해 25만달러까지 치료비를 주게 되어 있지만 중단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보험회사의 의사로부터 진단을 요구하고 앞으로의 치료여부를 검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의사들이 보험회사의 편이 되어 치료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진단 내립니다. 아마도 귀하의 아드님도 이런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가 생기면 변호사가 뉴저지에서는 무과



▲ 김동민 변호사

실법에 의해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합니다. 그래서 만약 귀하의 아드님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의사가 계시면 다시 치료비 혜택을 여는 방법입니다.

그럼 귀하께서 의문하시는 보상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뒤에 있던 차의 운전자 증인이 말하길 귀하의 아들이 갑작스레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았

다고 하는데, 중요한 점은 과연 그러면 그 증인은 법원의 재판에 나와서 재판석의 증인으로 설 것인가? 귀하의 아들을 친 운전사는 치기 전 얼마전에 아들을 보았는가? 두 운전자의 진술이 똑같은가? 운전사는 아들을 볼 당시, 차를 멈추거나 피할 수 있었는가? 그 자동차는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아이가 빨간 불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보행자나 자전거에 탄 사람을 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운전 규칙법은 안전한 가운데 운전을 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안전하지 않으면 통행할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귀하께서 혼자 처리하려니 얼마나 힘들까 생각합니다.

결국, 보험회사들은 손님을 편에 서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끝으로 다행인 부분은 아드님이 만 18세가 되지 않았으며 시효가 살아 있으므로 빨리 변호사를 구하시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의문사항은 선임하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습니다

본 독자 상담 코너 -물어보세요- 난은 각종 분야에 걸쳐 한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답변을 실게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42-22 27st. LLC, N.Y. 11101.

한국일보사 편집국 「물어보세요」 담당자 앞

팩스 : (718) 784-7381.

일하는 현장에서 다쳤을 때 보상은

〈문〉 저는 가게수리를 하는 목공수입니다. 가게 수리를 받아 수리를 하러 가는 도중 현장에 도착하여 지하실을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문은 열리고 엘리베이터 바닥은 없어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한 상태인데 제가 어떠한 보상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먼저, 귀하의 사건 보상에 관하여 2가지의 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일하던 과정이었으니 노동근로자법에 의한 Worker's Compensation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는 치료비, 주급 외 최종심사에 의해 보상을 받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던 근무중 다친 자에게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가장 중요한 보상은 뉴욕 상해법에 의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일하던 가운데에 사고가 나시는 분들, 예를 들면 택시운전사,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식당·세탁소·델리·야채·딜리버리·석면 특히 목수업에 계시는 분들이 저의 경험에 의하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삼자 소송'이라 합니다. 그 이유는 일하던 가운데 다친 종업원은 고용주를 직접 소송할 수 없으므로 간접적으로

소송하는 방법입니다.

즉, 귀하의 케이스를 볼 때 첫째, 엘리베이터는



▲ 김동민 변호사

건물의 구조이므로 구조에 불상사가 발생할 당시, 빌딩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빌딩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의 부작용 원인을 찾아보면 엘리베이터를 고치는 회사의 부주의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회사를 소송하여 그 회사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타려 할 당시 문이 열리자 바닥을 못 보고 떨어졌다는 것을 참고할 때, 어떤 조명의 부주의로 사고가 날

상 해 법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한 엘리베이터를 유지하고 있는 테넌트를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목수업이 다른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작업 중이었으면 하청을 준 회사(도급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삼자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 치료비, 수술비, 교통비, 가정부, 사고로 인해 밀린 주급 외 앞으로 일 못할 것에 대한 보상등이 있고, 가장 큰 보상은 고통의 값(Pain & Suffering)에 대하여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사 단계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변호사를 통해 엔지니어(전문가)의 소견 즉, 엘리베이터 불상사의 원인, 사고현장 증명사진, 앰블런스의 기록, 경찰기록, 엘리베이터의 부작용을 알만한 증인 확보 등의 조사가 시급하겠고, 그리고 조사가 끝나는대로 소송이 들어가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1111

〈문〉 저는 뉴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치료비를 주는 보험회사 측에서 의사를 동원하여 진단을 하고자 하여 의사를 찾아가서 약 10여분간 진단을 마치고

교통사고 치료비 중단위기에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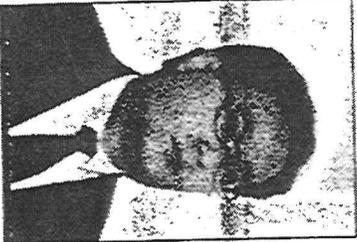
돌아와 보니 더 이상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몸이 아프고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범위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회사들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치료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례들은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과장시키기 위해 치료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

리뉴스 신문에서는 이러한 비양심적으로 보험회사측을 위하여 일하는 의사들을 형사입건한 사건이 실린 적도 있습니다. 법에 입각해 볼 때, 의사들은 반드시 독립성을 가지고 의사 소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는 것인데 이 중재에는 선정될 중재인 대부분이 전 판사들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재인과 치료비를 주지 못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의사(진단서와 귀하를 치료해 오던 의사 즉, 연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맞대고 판가름을 하는 것입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이 중재제

상 해



▲ 김동민 변호사

〈답〉 귀하의 질문은 뉴욕주 무과실법에 의해 치료비를 받고 있던 과정에서 일어난 상태입니다. 뉴욕주에서는 무과실법에 의하여 피해자당 최소한 5만달러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저지에서는 각 개인당 25만달러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과실법에 의해 받는 치료비가 보험회사가 주게 되어있는 이유는 주정부에 무과실법을 만들어 모든 자동차 보험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일

보험회사는 지사에서 선택한 의사를 동원하여 앞으로의 치료 필요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회사들 측에서 선택하는 의사들이 반드시 독립적인 편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욕 데일

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간혹 어떤 의사들은 그 진단과정의 비용을 많이 제출해 주는 보험회사편에서 진단서를 써다 보니 피해자가 주장하는 비용은 달리 치료가 필요없다고 진단함으로써 앞으로의 치료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따릅니다.

첫째, 귀하의 치료문제에 있어 앞으로의 치료부담을 귀하께서 해야 하고 둘째,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의사의 진단서가 상대방의 책임보험회사 즉, 피고측의 보험회사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사건에도 보상을 받는데 있어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후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뉴욕에서는 중재 제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중재제판이란 치료비를 주고 있는

은 1달 이내에 중재제판 날짜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건들이 선정되어 있으므로 약 1~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중재제판을 나오는 중재인은 보험회사의 치료비 거부 내용과 현실사항을 대부분 잘 파악함으로써 좋은 성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재제판 날짜가 잡히기 전에 중재제판을 신청하는 단체에서는 어떠한 사건을 보험회에 신청함으로써 보험회사측의 반응이 더 빨리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중재제판에서 내린 판결문은 하나의 법정절차를 받은 것이므로 그 결과가 귀하의 보상사건 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질문이 계시면 다시 연락하여 주십시오.

도로 부실 인한 자동차사고 보상은?

상 해

〈문〉 지의 아는 분이 약 2개월 전에 차를 사고 가다 뉴저지에서 전봇대에 부딪친 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그 길은 언덕 위에서 내려오는 비탈길이고 전봇대 근처에 조명이 불투명하여 어느 길이 치밀인지 불확실하고 사고가 난 새벽에 경찰에 의하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기운데에서 전봇대를 받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 미국 언론단체에 보도가 되었으며 약 일주일 전 똑같은 장소에서 어느 미국분이 또 전봇대를 받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지역에는 전봇대 앞에 새로운 전봇대를 설치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 제일 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점은 변호사를 통해 상속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사망한 유가족을 비롯, 사망자가 남긴 유언장이 없

을 경우 가까운 식구 중 법정대리인을 상속인으로 결정한 후 법원을 통하여 상속위임을 받아 사망자의 모든 권리를 대신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보상을 받을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차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전에도 여러번 설명한 무과실법에 의해 사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망 혜택이란 즉, 징계식을 위해 나오는 것이 미 병원에 있는 동안 모든 비용을 커버해 줍니다.

둘째, 귀하께서 말씀한 사건을 정리해 보건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커하는 후시 그 도로나 도로선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난 후부터 90일내에 공지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공지신청



▲ 김동민 변호사

에 대한 절차는 전 3월 18일자 칼럼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이 공지신청을 접수한데에 있어 좀 더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 도로의 부실공사로 인한 것인지, 그렇다면 교통기권에 신청을 해야 하며 아울러 부주의한 전기사설로 인해 전등이 없으므로 일어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내에 파악이 안되었을 경우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판에다 다 공지신청

을 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경찰이 음주운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행하는 가운데 차를 세우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면 경찰당국에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 도로가 부실된 공사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면 그 점도 과실로 참고가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전에 여러 사고가 있었는지 위태로운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점도 과실로써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일주일 한 점은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반대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되게 된 동기인 술집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주립 샵'이라는 상해법이 있는데 이는 술집에서 고객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고 갈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너무 많은 주량의 술을 팔았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술집의 보험회사는 보상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힘들고 중요한 점은 술이 취하도록 마시고 전봇대를 받은 사람도 과실이 있으므로 그럼 어느 쪽이 더 큰가를 비교해 심해

1997년 4월 15일 (화)

한인유학생 윤화사건 검찰청에도 항의서한

〈속보〉 등교길에 무면허 운전자
밴에 치어 11일 사망한 유학생 임
은경(25)씨 사건(본보 4월 15일자
A 2면)과 관련 임씨의 유가족을 대
표하는 김동민 변호사가 15일 뉴욕
시장 및 퀸즈 검찰청에 사고 운전
자 체포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

김 변호사가 루돌프 줄리아니 뉴
욕시장과 로버트 모겐타우 검사장
에게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뉴욕
시경을 비롯 관계당국이 이번 사건
을 신중히 다루고 있지 않다"며

"임씨 가족과 뉴욕한인사회는 이번
사건이 완벽히 조사되어 무면허 운
전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관련 줄리아니 시장 대변인
드와이트 윌리엄스씨는 16일 "어제
날짜로 발송된 공문 이라면 아직
시장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가
능성이 높다"며 "자세한 내용을 모
르는 현 상황에서 시장실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모겐타우 맨해탄 검사장 대
변인 프레드리카 잭스씨는 "김 변
호사가 발송한 편지를 팩스로 받았
다"며 "현재 그 내용을 검토중"이
라고 밝혔다.

한인유학생 輪禍 사망

등교길 임은경양, 트럭에 치여

한인 여자 유학생이 11일 오후 맨하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앞길을 건너는 도중 무면허 운전자의 트럭에 치어 병원으로 급송됐으나 심한 출혈로 사망했다.

뉴욕시경 대변인 모리 경관은 13일 "25세 아시아여성 임은경(331 E. 91 St.)씨가 11일 오후 12시30분경 맨하탄 85가와 5 애비뉴 건널목에서 우회전을 하는 트럭에 치어 뉴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경 사망했다"며 "경찰은 당시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적발하고 티켓(Summons)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모리 경관은 또 "목격자들에 따르면 임씨가 헤드폰을 쓰고 길바닥을 바라보며 길을 건너다 우회전하는 트럭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며 "경찰은 이번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를 체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맨하탄 파슨스 미술대학 유리공예과 3학년 재학생인 임씨는 사고직전 일본인 남자친구 수헤이 유케세(26)씨와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아침을 먹은 후 12시 수업을 위해 학교를 가던중 사고를 당했다.

학교친구 송자인씨는 13일 "은경이는 평소 성격이 강하고 명랑하며 항상 주변사람들을 생각하는 좋은 친구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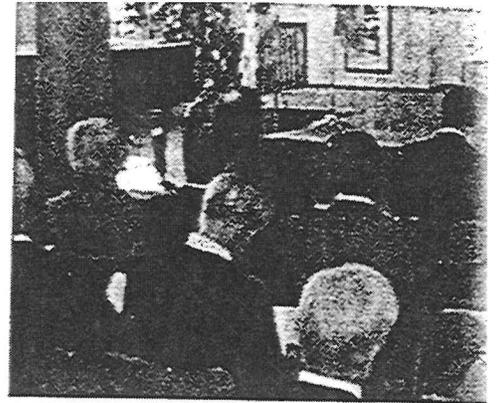
한편 임씨의 아버지 임길수(58)씨와 어머니 김순남(49)씨는 뉴욕 총영사관 윤희섭 영사의 연락을 받고 12일 저녁 미국에 입국했으며



▲ 임은경 양

사망한 의동딸의 시신을 화장한 후 한국에서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신용일 기자〉



▲ 제24대 뉴욕한인회는 13일

24대 한인회

마지막 정기총회

제24대 뉴욕한인회의 실질적 업무가 마감됐다

뉴욕한인회를 앞두고 마지막 정기총회 결산보고 1차상환 모금 대 한인회장 보고 있다.

이날 보고하면 제24대 96년 4월 20

축구경기후 폭력 소동

뉴욕한인축구협회(회장 임국찬)는 13일 경기 관전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구타한 김서래(아리랑 축구단) 선수에게 1년 경기출전 정지를 선언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본부석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김대창(아리랑 부단장)씨에게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경 플래싱 메도우 파크에서 열린 아리랑축구단과 97브라더스와의 경기에서 97브라더스가 3대1로 승리를 거두자 이에 불만을 품은 김선수가 삼각팬티차림으로 외

국 심판인 아몬스(Amons)씨를 주먹으로 구타했다. 이에 협회측은 주일(뉴욕축구단 단장), 허순범(맹호축구단 단장), 윤원석(다이아몬드 단장), 김유목(메도우축구단 감독), 김양기(협회 사무총장), 김성남(상벌위원장) 등으로 상벌위원회를 구성 김선수에게 1년 출전정지, 아리랑 축구단에게 2백달러의 벌금조치를 내렸다.

한편 김대창씨는 "협회 임원진이 김선수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를 내린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본부석 집기를 부쳤다"고 말했다.

1-8C
Washington D
L P

〈문〉 저는 한국 식품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사깁 카트를 밀고 가다 파킹장에 응덩이가 파여 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집에 왔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 의사에게 가보니 골조가 났다고 합

과실이 되고 또한 파킹장의 응덩이를 모른다 할지라도 상해법에서는 "보통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가? 또 보통 주인이라면 그 위험한 장소를 고쳤어야 하는가?"하는 이론 아래 태만한 주인

해서는 상업으로 돈을 벌고있는 주인 쪽에서는 고객에 대한 안전을 꼭 중요시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손님은 식품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귀하는 또한 반드시 땅

식품점 주차장서 다리 다쳤는데...

상 해

니다. 앞으로 많은 치료비가 들 것 같은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귀하의 사건을 고려해 보건대, 귀하께서는 사깁카트를 사용하게 해준 식품점과 그 땅(파킹장) 주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품점의 주인은 사깁 카트를 사용케 함으로써 손님(고객)들이 더 많은 물건을 사거 차에 운반할 수 있으므로 그 사깁카트를 사용하게 하여준 것입니다. 만약 상업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어떠한 운반차를 사용하게 하여 주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이 사깁카트를 끌고 파킹장에 까지 운반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도로횡단이 항상 안전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는 점은 주의깊게 관찰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파킹장에 응덩이가 파인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 점이 바로



▲ 김동만 변호사

을 과실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쪽에서 꼭 응덩이가 파진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아야만 과실이라 한다면 너무 많은 주인들이 과실을 피하기 위해 태만한 상태로 모른 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보상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서는 보험법이 발달되어 있고 태만한 주인쪽은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하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해법의 기초적인 철학은 무과실한 피해자를 누가 보상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시작되고, 그러기 위

(파킹장)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또는 땅 주인은 세를 주고 돈을 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상해법은 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을 종합해 보건대 과연 언제부터 그 파킹장에 응덩이가 생겼는지를 조사해 보면 만약 파킹장(땅) 주인이 위험한 상태에서 고치지 않고 그 식품점에게 세를 주었다면 그 점도 과실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변호사들이 착각하는 점은 땅주인과 가게 주인의 리스계약서에 의하면 상업쪽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꼭 아셔야 할 점은 상해법은 계약법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즉, 땅 주인의 입장에서 또는 파킹장의 경영과 안전을 위한 직업은 상업주가 하여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땅 주인과 가게 주인의 계약일뿐 무고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과실을 저지른 양쪽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점을 알고 싶으시면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